

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6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5. 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5. 1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9. 5. 11 총무위원회 상정 의 결

2. 폐지이유

- 1999. 12. 31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,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88호(2009. 01. 30 ~ 2009. 02. 20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의료보험법(법률 제5854호 1999. 2. 8 폐지, 2000. 1. 1 시행)
- 국민건강보험법(법률 제5854호 1999. 2. 8 제정, 2000. 1. 1 시행)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」의 시행 근거법인 「의료보험법」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제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고성군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·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5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